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보호와 인권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대범죄 등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안 제2조)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9개 범죄로 정의하고, 공소청 소속 공무원·경찰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함.

나.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안 제3조)

중대범죄 등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안 제5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직무, 임명절차 및 임기(안 제6조)

- 1)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 2)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및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

마.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안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33조 및 제34조)

중대범죄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사법관 및 1급부터 9급까지의 전문수사관을 두고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중대범죄 등의 수사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안 제58조)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첩을 요청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검사와의 관계(안 제59조)

- 1)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 2)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중대범죄 등의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되 수사의 공정성·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의 태양·규모 또는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송치 전에 검사와 상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아.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60조)

- 1) 사건관계인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등에 관한 적정성 또는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수사 등을 수행한 중대범죄 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2) 수사심의 신청을 받은 사건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사의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6. 1. 12. ~ 1. 26.) 예정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말한다.
 - 가. 부패범죄
 - 나. 경제범죄
 - 다. 공직자범죄
 - 라. 선거범죄
 - 마. 방위사업범죄
 - 바. 대형참사범죄
 - 사. 마약범죄
 - 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 자. 사이버범죄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다. 중대범죄 및 가목·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제3조(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①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을 둔다.

③ 인구, 교통, 지리적 면적 등 그 밖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지방수사청이 설치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수사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지방수사청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지청의 설치·명칭·위치·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2. 법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구성

제6조(중대범죄수사청장)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을 하여,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1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수사사법관으로 재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제8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할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법원행정처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차장)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차장을 둔다.

② 차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차장) ① 지방수사청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②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그 지방수사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지방수사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④ 지방수사청 차장은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을 두며,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수사사법관의 직급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수사사법관으로 구분한다.

제12조(수사연구관)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다.

② 수사연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사법관 또는 전문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며, 지방수사청의 수사사법관 또는 전문수사관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수사연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고 중대범죄등의 수사사

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제13조(그 밖의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으로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 외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

제14조(직제)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

제15조(수사사법관)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업무의 적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사법관을 둔다.

제16조(수사사법관의 직무) ① 수사사법관은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사사법관은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리 적용 및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수사사법관의 자격) 수사사법관(중대범죄수사청장인 수사사법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일

부나 전부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제18조(수사사법관의 임용) ① 수사사법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수사사법관의 신규채용은 제46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수사사법관의 임용 기준에 따른다.

③ 수사사법관을 보직할 때에는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사법관의 임용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수사사법관의 신분보장) 수사사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수사사법관의 징계 사유) 수사사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사법관을 징계한다.

1. 제57조를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은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5.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사법관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수사사법관 징계의 종류) ① 수사사법관의 징계는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사사법관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④ 견책은 수사사법관으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수사사법관 징계위원회) ① 수사사법관의 징계 의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수사사법관 징계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징계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수사사법관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다만, 파면 및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⑤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안전부차관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수사사법관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 ⑥ 예비위원은 수사사법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⑦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사법관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수사사법관의 징계절차) ① 수사사법관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징계청구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중대범죄수사청장
- ② 징계청구자는 수사사법관이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징계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징계의 청구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사법관의 징계 절차, 징계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사법관의 징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8조의4,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제25조(수사사법관의 적격심사) ① 수사사법관(중대범죄수사청장인 수사사법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임명 후 7년마다 수사사법관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수사사법관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수사사법관 적격심사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제47조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수사사법관 적격심사에서 수사사법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수사사법관의 퇴직을 건의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수사사법관에게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수사사법관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사법관 적격심사

의 대상자 의견진술, 심사·처리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7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① 수사사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사법관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 명령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파견 및 겸임 금지) 수사사법관은 대통령비서실 또는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 또는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제29조(공직임용 제한) ① 수사사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수사사법관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제30조(감찰관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 감찰관(이하 “감찰관”이라 한다)은 중대범죄수사청 내부 또는 외부로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하며, 감찰관은 수사사법관으로 보한다.

② 감찰관은 10년 이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으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수사사법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을 제청하고, 임용 당시 수사사법관이 아닌 사람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을 제청한다.

⑤ 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⑥ 임기가 끝난 감찰관은 후임자가 임용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1조(감찰관의 전보)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제20조 각 호의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감찰관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제32조(감찰관의 퇴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감찰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감찰관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에 관하여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임명 후 7년마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제33조(전문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수사관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한다.

제34조(전문수사관의 직무) 7급 이상의 전문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의 전문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제35조(전문수사관의 임용) ①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6급 이하의 전문수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수사관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전문수사관의 신규채용) ① 전문수사관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전문수사관의 채용시험 및 제38조에 따른 승진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전직) ①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은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임용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절차 및 시험의 면제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전문수사관의 승진) ① 전문수사관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근무 경력 및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5급 이하 전문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전문수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을 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임용 방법,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전문수사관의 징계) ① 전문수사관에 대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1. 5급 이상 전문수사관: 「국가공무원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6급 이하 전문수사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② 전문수사관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전문수사관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심사 절차,

그 밖에 전문수사관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수사관의 징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0장을 준용한다.

제40조(전문수사관의 적격심사) ① 3급 이상 전문수사관이 근무성적 및 근무능력에 대한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받은 때에는 전문수사관으로서 적격한 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전문수사관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전문수사관 적격심사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제47조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전문수사관 적격심사에서 수사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전문수사관의 면직을 건의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전문수사관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전문수사관에 대한 면직을 제청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수사관 적격심사의 대상자 의견진술, 심사·처리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전문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전문수사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전문수사관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43조(당연퇴직) 전문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44조(파견 및 겸임 금지) 전문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제45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전문수사관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장 그 밖의 임용에 관한 사항

제46조(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①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준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수사사법관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4.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의 임용, 전보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전문수사관의 수사사법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 각 1명
2.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적격심사위원회) ① 수사사법관 적격심사와 전문수사관 적격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5.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수사사법관 2명 및 전문수사관 2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

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 및 임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보수) ①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의 보수는 담당 직무의 비중 · 책임도 및 난이도, 업무수행능력, 업무 실적 및 그 밖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49조(정년)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제외한 수사사법관(제37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수사사법관을 포함한다)의 정년은 63세로 하고, 전문수사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50조(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사사법관(중대범죄 수사청장인 수사사법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전문수사관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외에도 수사 사건의 처리 결과, 수사 절차상의 위법 · 과오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에 대

한 평정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겸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수사사법관 또는 전문수사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수사사법관 또는 전문수사관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는다.

제52조(인재개발) ①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담당 직무에 필요한 지식, 사고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행정소송의 피고)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에 대한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제5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7조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보고, 같은 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본다.

② 「국가공무원법」을 전문수사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 중 “5급 공무원”은 “5급 전문수사관”으로 보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6급 이하의 전문수사관”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8조와 제70조”는 “이 법 제41조 및 제45조”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제43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제55조(권한남용 금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①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이의제기를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7조(정치 관여 금지 등) ①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사건에 대하여 유리 또는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처분을 약속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5.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제58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 제2호가목·나목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 요청을 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기관이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제59조(검사와의 관계) ①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의 수사에 관한 사항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가 담당하고, 지청의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한 지방수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가 담당한다.

③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 경위 및 수사경과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수사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사항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하거나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범죄의 태양, 규모 또는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와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혐의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검사는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검사와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 간에 준수하여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수사심의 등)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진정인, 피진정인 및 그들의 변호인·대리인을 말한다)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입건 전 조사, 수사에 관한 적정성 또는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또는 수사를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및 각

지방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수사심을 신청한 사건에 대한 심의
2.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심의
3. 주요 수사정책 등에 대한 자문 및 권고
4. 중대범죄수사청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각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말한다)과 회의 시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구

성, 부의, 심의절차 및 그 밖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수사장비의 사용) ①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범인 검거 등에 필요한 수사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장비의 종류 및 수사장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2조(유치장) ① 중대범죄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수사청 또는 지청에 유치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장이 설치되지 않거나 유치장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수사청 또는 지청에 인접한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해당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교정시설의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3조(손실보상) ① 국가는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국제협력)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사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제65조(위임규정)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66조(정치 관여죄) 수사사법관 또는 전문수사관으로서 제57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4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4호 및 제5호는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의 임명 등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에 필요한 행

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고,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의 임용 특례) ① 제18조제2항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제15조에 따른 수사사법관

2.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33조에 따른 동일계급 또는 상당계급 전문수사관

3. 제2호 외의 일반직공무원: 제13조에 따른 동일직급의 일반직공무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같은 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시험은 면제하고 시보임용은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계급의 전문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시험을 면제하지 아니하되 시보임용은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사람의 봉급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매년 해당 연도 공무원 전체 평균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한 인상분을 반영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임용의 방법·절차, 임용예정직급, 경력인정, 봉급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시보임용에 관한 사항은 면제하지 않는다.

제6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제42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및 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종전의 「검찰청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행정안전부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

제8조(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

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제4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

정안전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